

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 - 20호

『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』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년 4월 10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수의 역사적·문화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인천시민의 문화 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시장이 보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 및 보호수 소유자와 관리인의 보호수 지정 신청 절차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보호수 해제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시장이 보호수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)
- 보호수 소유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각종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시장이 보호수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9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. 4. 20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-6235, 팩스 440-8765, 이메일 lagoon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·반여부와 그 사유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·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 : ○ 성 명 : 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붙임자료

가. 조례안 1부

나.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

다.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·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보호수”란 노목(老木), 거목, 희귀목(이하 “대상수목”이라 한다)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「산림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.
2. “관리청”이란 시장이 지정한 보호수를 관리하는 군수·구청장을 말한다.
3. “수목보호기술자”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 및 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.

제3조(보호수의 지정) ① 시장은 대상수목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.

② 보호수 대상수목의 소유자와 관리인 등(이하 “소유자 등”이라 한다)은 대상수목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보호수 지정을 신

청할 수 있다.

③ 관리청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,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⑤ 관리청은 지정목적에 따라 보호수를 보호·관리하여야 하며,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4조(보호수의 해제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기상,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그대로 둘 경우에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군사시설 또는 공용·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,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.

제5조(보호수 표지) 시장은 보호수를 지정했을 때 그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6조(관리비용 지원 등) ① 시장은 보호수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에

보호수 유지·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제7조(보호수 소유자 등의 의무) ① 보호수의 소유자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고는 새로운 소유자 등이 한다.

② 보호수의 소유자 등은 해당 보호수가 멸실 또는 고사했을 경우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호수의 보호) ① 보호수가 있는 장소에서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1. 입목(立木)·죽(竹)의 벌채

2. 임산물의 굴취·채취

3. 절토(切土)·성토(盛土)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

4. 그 밖에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

② 시장 또는 관리청은 보호수 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수 가격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정(算定)된 가격으로 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벌채, 굴취·채취, 절토·성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·관리

계획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의 보호·관리계획 등을 받은 관리청은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위를 승인 할 수 있다.

⑤ 관리청은 보호수의 건전한 생육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예방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9조(원상회복 명령) 관리청은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제10조(보호수 점검) ① 관리청은 보호수의 보호·관리를 위해 연1회 이상 정기 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수의 보호·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1조(관리대장 작성) 관리청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호수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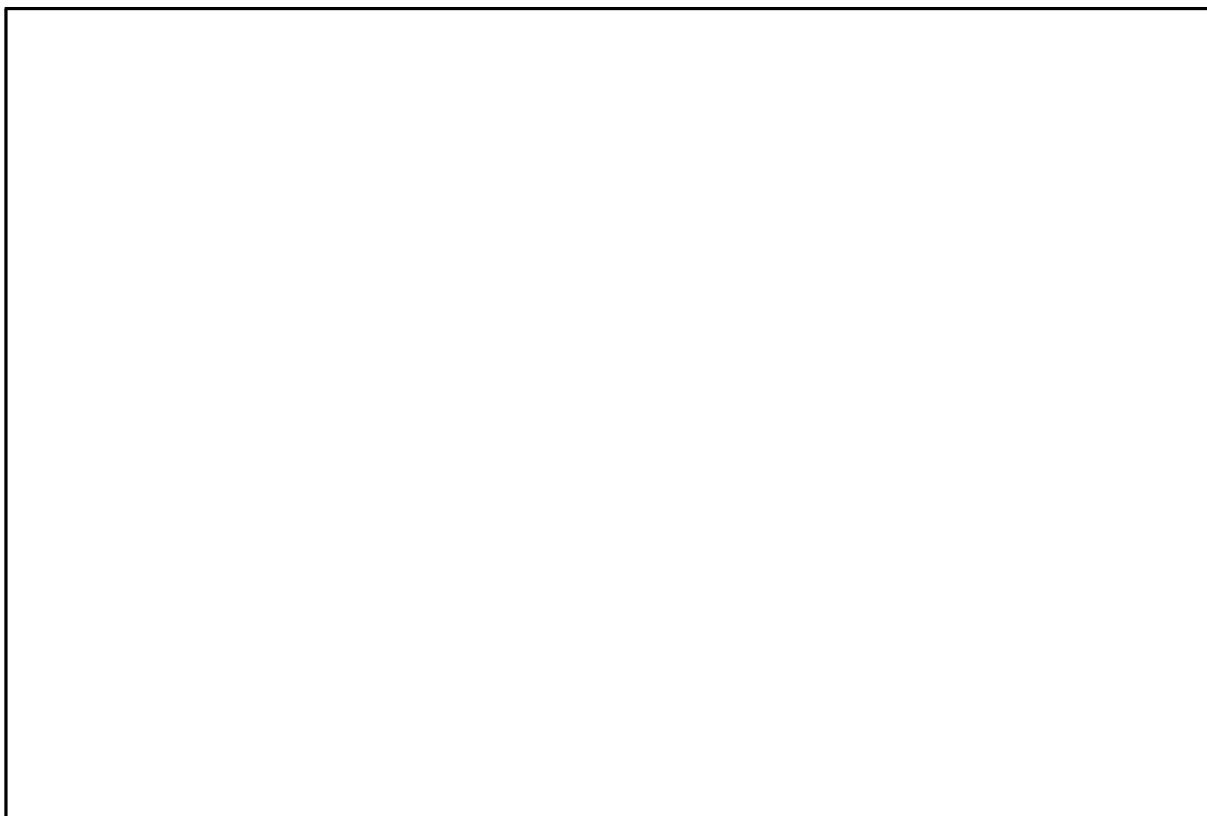
보호수 지정 요청서

수 목 명			본 수			
소재지 및 위치			지 목			
수 령	년	수고	m	흉 고 들 레 (흉 고 직 경)	m ()	
소 유 자	주 소		관리자	주 소		
	생년월일			생년월일		
	성 명			성 명		
지정사유						
나무의 특징						
전설 및 고사						
주변 현황 및 소유자 동의 등						
보호수 지정의견 (군·구)						

☐ **위치도**



☐ **수목사진** (근경 및 원경, 여러 각도)

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보호수 지정 관리대장

(앞쪽)

지 정 번 호				지정연월일	
보 호 수 종 명				본 수	
소재지 및 위치				지 목	
수 령	년	수고	m	가슴높이지름 (나무둘레)	m (m)
소 유 자	주 소		관리자	주 소	
	성 명			성 명	
지 정 사 유					
나 무 의 특 징					
해 제 사 유					

지정사유 : 연혁 및 전설 포함

(뒤쪽)

날짜	구분	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사항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지방자치법 -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- 제22조 (조례) ☐ 산림보호법 - 제10조(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) - 제13조(보호수의 지정·관리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련 법령 발췌 사항

☐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☐ 산림보호법

제10조(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) ①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·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·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,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(이하 "산림보호관리협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·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, 보호·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보호수의 지정·관리) ① 시·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(老木), 거목(巨木), 희귀목(稀貴木)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,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,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는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보호수의 유지·관리 및 생육환경개선 비용
 - 매년 1억원 이하로 유지·관리
 - ※ 인천시 보호수는 113주이나 수목의 생육상태에 따라 보호수 유지·관리비 투입 예정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장 김학열